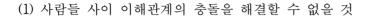
한국공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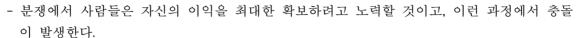
2025학년도 1학기

====== 【 기술보호와 법 】 ======= 三月早龄 处告. ्रोहर्री असे का श्रीति की स्टूर्ण वर्ष



1. 법의 필요성 - 만약 법이 없다면?





- 충돌은 반드시 고의적인 것만은 아니고, 많은 경우 서로 다른 관행이나 계약에 대한 해석 이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문구가 확실하지 않아 서 생기기도 한다.
- (2)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때 이를 규율할 수 없을 것



- ① 법률은 법규범의 하나이다.
- 법에는 법률 외에도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고, 불문법인 관습법, 판례법 등도 법을 구 성한다. 따라서 법은 법률 이상의 규범이다.
- ②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다.
- (1) 성문법 = 글저글 마을 제 된 (법전) 원 이 .
- 1) 성문법의 의의
-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공포한 법을 말한다.

- 법제도의 중심이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대륙에 위치한 나라에서 따르고 있어 '대륙법주의'라고도 한다.
- (장점) 문자로 표시되어 있어서 법의 존재가 명확하고, 통일화 및 정비가 용이하며 <mark>법질서가</mark> 안정적이다. 글자코 안듯이 '놨으니 ^{안제든} 됐하다.

(단점) 사회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다.

-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mark>관습법 등 불문법을 부분적으로</mark> 인정한다.

(2) 불문법

- 1) 불문법의 의의
-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자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을 말한다.
- 관습법, 조리, 판례법 등이 있다.
- 2) 불문법주의
- 법제도의 중심이 불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영국, 미국 등 이들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따르고 있어서 '영미법주의'라고 한다.
- (장점)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 (단점) 법이 문자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존재가 명확하지 않고, 통일적 정비가 용이하지 않아서 안정성이 유동적이다.
- 불문법주의 국가에서도 단점 보완을 위해 부분적으로 성문법을 인정하고 있다.

- 불문법의 하나로 법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복적인 사회 관행이 법규범으로 자리잡은 형태이다. 사람이 오래된 관습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자연스러워서 일단 받아들인 후에는 마치 법전에 포함된 조항처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때로는 어떤 관습을 법전어딘가에 쓰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실제 사회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진 관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법화되어 법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하며, 적용 가능한 성문법 조항이 없을 경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역할을 한다.

② 판례법

-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밝혀진 이론이나 법칙인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을 의미한다.
- 법원의 판결 자체가 판례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 모써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불문법이다.

(읽어볼 얘기) 197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법으로 성인식, 혼례, 상례, 제례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도층의 허례허식을 막고 과다한 유교의식을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1973년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처벌조항이 만 들어져서, 청첩장을 돌리거나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오랜 관습을 법으로 금지하려다보니 실효성이 없어서 결국 1999년 이 법은 폐지 되었다.

======= 【 기술보호와 법 】 ======== 4. 법의 계통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1) 대륙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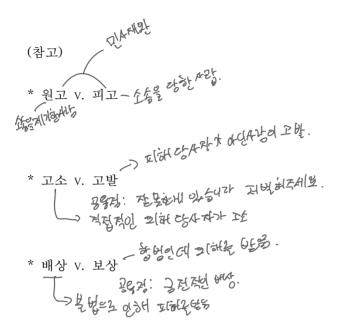
-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대륙에서 생성, 발달한 법계통
- 성문법주의
- (장점) 조직적, 논리적 (단점) 사회변화에 신속 대응 못함

(2) 영미법계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법계통
- 판례법주의
- 배심재판제도

<< 국민참여재판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 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
-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 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
- 1심 형사재판 중 일부 법정 요건 충족의 경우
-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
- 배심원의 자격 -->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음.
- 배심원선정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



5. 법의 효력 - 시간적 효력

(1) 법의 시행

- 법은 시행에 앞서 '공포'를 한다. 공포는 법의 성립과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기간은 '법의 주지기간'으로, 법에 따라서는 따로 시행일을 정하기도 한다.

(2)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적용하지 않고,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예.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